

의안번호	2216125
의 퇴 인	윤건영의원
회 답 일	2026.5.8.
추계번호	26D019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8조제1항 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	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 ※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18조제1항 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재외선거 실시(안 제218조제1항)

- 개정안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다만,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수, 해당 재외국민의 선거구를 특정하고 투표용지의 선별과 배부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의 범위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, 기초자치단체장,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·도의회의원, 지역구 및 비례대표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,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배부
 - 가장 최근에 실시된 재외선거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로, 당시 추정되는 재외선거권자(외국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) 수는 총 1,974,375명
 - 이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 등으로 투표를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 수는 258,254명이고 최종적으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05,269명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